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85
----------	------------

제안년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7조제3항은 독서 관련 사업의 우수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지급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경비(교통비 등)’을 규정함.
- 다만,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교통비 등’을 명기하는 것은 자칫 참여자에게 교통실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공직선거법」저촉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프로그램 경비(교통비 등)”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로 수정함(안 제37조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제3항 중 “프로그램 경비(교통비 등)”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 ----- -- 한다.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u>북스타트</u> 사업	3. ----- ----- ----- <u>업</u> <u>마북돋움</u>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u>경우</u>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u> ④ · ⑤ (생 략)	----- 4. (현행과 같음) 5. <u>공공 독서 모임 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 <u>경우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경비(교통비 등) 등을 -----</u> ----- <u>제공</u>-----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③ ----- ----- <u>경우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 등을 -----</u> ----- <u>제공</u>-----.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
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북스타트”를 “엄마북돋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를 “경우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
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 등을”로, “참가
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을 “제공”으로 한다.

5. 공공 독서 모임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 -----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u>북스타트</u> 사업	3. ----- ----- <u>엄마북</u> <u>돋움</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공공 독서 모임 사업</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u>경우</u>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참가자에게</u> 상품권, 기	③ ----- ----- <u>경우 참여자에게</u> <u>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u>

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 등을 --- 제공---

④ · ⑤ (현행과 같음)